

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제 1 조(목적) ~ 제 3 조(이용대상) (생 략)	제 1 조(목적) ~ 제 3 조(이용대상) (좌 동)	
제 4 조(<u>홈페이지</u> 이용방법) (생 략)	제 4 조(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</u> 이용방법) (좌 동)	- 홈페이지 명확화
제 5 조(<u>애플리케이션</u> 이용방법) ① ~ ⑥(생 략)	제 5 조(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</u> 이용방법) (좌 동) ① ~ ⑥(좌 동)	- 애플리케이션 명확화
제 6 조(은행창구 이용방법) (생 략)	제 6 조(은행창구 이용방법) (좌 동)	
<u>(신 설)</u>	<u>제 7 조(은행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u>	- 서비스 제공 채널 추가에 따른 조 신설
제 <u>7</u> 조 (조회) ① 고객은 <u>제 4 조 및 제 5 조</u>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②고객은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 ③ ~ ⑤(생 략)	제 <u>8</u> 조 (조회) ① 고객은 <u>제 4 조, 제 5 조, 제 7 조</u>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②고객은 <u>은행비대면채널과</u>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 ③ ~ ⑤(좌 동)	- 서비스 제공 채널 추가에 따른 조 신설 - 조 चे하, 은행비대면 채널 반영

제 <u>8</u> 조 (잔고이전·해지) ① ~ ⑤ (생 략)	제 <u>9</u> 조 (잔고이전·해지) ① ~ ⑤ (좌 동)	- 조 체하
제 <u>9</u> 조 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(생 략)	제 <u>10</u> 조 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(좌 동)	- 조 체하
제 <u>10</u> 조 (서비스 이용수수료) (생 략)	제 <u>11</u> 조 (서비스 이용수수료) (좌 동)	- 조 체하
제 <u>11</u> 조 (약관의 변경) (생 략)	제 <u>12</u> 조 (약관의 변경) (좌 동)	- 조 체하